학교법인 상지학원 감사규정

제정 2015. 01. 06.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학교법인 상지학원(이하'법인'이라 한다) 정관 제29조의 제1항 및 정관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 및 산하 각급기관(이하'산하기관'이라한다)에 대한 감사 제도를 확립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건전한 경영풍토를 도모할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감사의 종류)

감사는 정기감사, 특별감사, 수시감사, 외부감사로 구분한다.

- 1. 정기감사는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특별감사는 이사장의 지시 또는 산하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.
- 3. 수시감사는 법인 및 산하기관의 각 부서의 업무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이사장 지시로 실시한다.
- 4. 외부감사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 제4항에 따라 외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이 법인과 산하기관에 대하여 실시한다.

3조(감사의 방법)

감사는 서면감사와 실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1. 서면감사는 증빙서류. 장부 등 제반 서류를 통하여 시행하는 감사를 말한다.
- 2. 실지감사는 질문, 입회, 확인, 실사 등을 통하여 조사,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이 규정 제2조의 모든 감사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실시한다.

제4조(감사의 직무)

-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- 1. 법인 및 산하기관의 재무회계 및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
- 2. 법령, 정관 및 제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
- 3.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거나 산하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안에 대한 감사
- 4.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확인

제5조(감사계획의 수립)

감사실시에 앞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1. 감사의 구분
- 2.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부서
- 3. 감사의 범위
- 4. 감사시기 및 기간
- 5. 감사인
- 6. 기타 감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사전조사)

진정, 민원, 제보 그리고 인지정보 등의 관련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사장은 산하기관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산하기관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(감사실시 및 통보)

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사항, 감사일정 등을 피 감사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부득이할 때 또는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(감사인)

- ①정기감사, 특별감사, 수시감사의 감사인은 법인감사(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제22 조의 임원인 감사를 말한다)와 법인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하며, 이사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산하기관 소속 교원 또는 직원을 감사인으로 임명하여 임시 로 감사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.
- ②외부감사의 감사인은 외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다.
- ③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, 외부 전문가를 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④정기감사, 특별감사, 수시감사의 경우 책임자를 둘 수 있으며, 감사책임자는 법인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이사장이 지명한다.

제9조(감사인의 독립원칙)

감사업무를 수행 중인 감사인은 법인의 의결 및 집행기관 또는 법인의 타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감사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감사인의 의무)

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- 1.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를 해야 하며 고의로 피감사기관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을 묵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- 2.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.
- 3. 감사인은 감사업무에 있어서 관계법령, 정관 그리고 제규정이나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(감사인의 권한)

- ①감사인은 피감사기관에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- 1. 감사실 및 감사업무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 설치요구
- 2. 장부, 증빙서류, 물품 등 제반 서류의 제출요구
- 3.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
- 4. 경위서, 진술서 또는 확인서 제출요구
- 5. 금고, 창고, 장부,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
- 6. 회계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
- 7. 기타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- ②전항의 요청을 받은 피감사기관 또는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2조(감사인의 신분보장)

감사인은 감사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
제13조(감사인의 대우)

감사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감사결과 보고)

①감사책임자는 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- ②감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1. 감사의 종류
- 2. 피감사기관명
- 3. 감사인
- 4.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
- 5. 기타 필요한 사항
- ③매회계년도의 결산감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이사회와 관할청에 당해 회계연도의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.

제15조(긴급보고)

감사책임자는 감사 중 중대한 위법,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여 긴급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그 내용을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시정요구)

- ①이사장은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.
- 1. 규정,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
- 2. 위법,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
- 3. 관계 교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
- 4. 관계 교직원에 대한 교육
- ②제1항 제3호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(중징계 또는 경징계)를 명시하여야 하며,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,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에 대한 의견을 첨 부해야 한다.

제17조(시정결과 보고)

①피감사기관의 장은 제16조의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

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- 1. 조치내용이 미흡한 경우
- 2. 조치내용이 요구내용과 다른 경우
- 3. 조치내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

제18조(이의신청)

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시정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은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9조(벌칙)

- ①감사책임자는 감사결과에 따라 관계자에 대해 이사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경고 또는 주의 등의 불이익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감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경고 또는 주의 등의 불이익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.
- 1. 피감사자로서 감사를 거부한 자
- 2. 감사를 방해한 자
- 3.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 등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
- 4. 보고를 태만하거나 허위 또는 부실 보고를 한 자
- 5. 감사기간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자
- 6. 불성실하게 감사를 받는 자

제19조(세칙)

이 규정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. 1. 6.부터 시행한다.